

CHECK LIST (VER. 2019.08)

구분	기준	미관	건축사설계확인서	허가검사조서(세움터)	착공	감리대상(비상주)	업무대행		사용승인
신축	신고 (100㎡미만)				●				●
	허가 (100㎡이상)	●	●	●	●	165이상	●		●
증축	신고 (85㎡미만)				●				●
	허가 (85㎡~100㎡)	●	●	●	●	165이상	●		●
용도변경	신고 (100㎡미만)					-			
	신고 (100㎡이상)					-			●
	허가 (100㎡미만)		●	●		-			
	허가 (100㎡이상)		●	●		-	●		●
대수선	신고					-			
	허가	●	●	●	●	-	●		●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